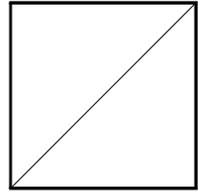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19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12. 22. (제 22 차)	

중소기업은행 2021 회계연도
인건비 예산(안)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12. 22.

1. 의결주문

-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중소기업은행의 2021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」에서 심의한 **2021 회계연도 중소기업은행 예산안을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에 따라 승인하고자 함**

*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②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,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. 주요골자

□ 예산심의 기본방향

-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(기획재정부)」을 준용하여 마련한 「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(금융위원회)」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
-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0.9% 범위 내에서 인상
(2020년 총인건비 11,504억원 → 2021년 총인건비 11,608억원)

□ 예산 조정 내역 : 20,487억원 요구 수용

① 총인건비 : 11,608억원 (전년대비 +0.9%)

-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 임금인상(0.9%), 급여성복리후생비(0.9%)

② 퇴직급여충당금 : 2,639억원 (전년대비 17.0%)
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실소요액 반영
(업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소송에 따른 추가예상액 포함)
- 준정년 퇴직금, 업적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 반영

③ 정원의직원 인건비 : 456억원 (전년대비 +0.9%)

- 전문계약직, 해외현지직원 임금인상(0.9%) 반영

④ 인건비예비비 : 5,784억원 (전년대비 +9.0%)

- 인력증원예비비(68억원), 정현원차예비비(335억원), 성과급예비비(1,108억원), 통상임금예비비(4,273억원)

< 인건비 예산 조정내역 >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년 예산		2021년 예산				
	예산 편성	전년대비 증감률	신청내용		예산조정(안)		
			금 액	증감률	금 액	전년대비	
						증감액	증감률
총인건비	11,504	4.4	11,608	0.9	11,608	104	0.9
인 건 비	11,389	4.4	11,492	0.9	11,492	103	0.9
급여성복리후생비	115	4.2	116	0.9	116	1	0.9
퇴직급여충당금	2,256	28.5	2,639	17.0	2,639	383	17.0
정원의직원인건비	452	8.6	456	0.9	456	4	0.9
인건비예비비	5,307	27.5	5,784	9.0	5,784	477	9.0
합 계	19,519	12.5	20,487	4.96	20,487	968	4.96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<붙임>

< 별지 >

2021 회계연도 예산서 (안)

< 목 차 >

예 산 총 칙 4

[별표1] 인건비 예산 총괄표 6

[별표2] 2021년도 직급별 정원 7

※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만
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

※ 예산총칙 중 2021년 추정 재무제표 관련 계수는 미확정 잠정치임

예 산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총칙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산의 규모) ① 2021년도 중소기업은행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.

1. 추정손익계산서

(단위:백만원)

비 용	수 익	순 손 익
15,650,000	17,050,000	1,400,000

2. 추정대차대조표

(단위:백만원)

자 산	부 채	자 본
342,932,056	318,333,056	24,599,000

② 2021년도 중소기업은행의 인건비, 인건비성 예비비의 관·항·목별 규모는 “별표1”과 같다.

제3조(예산의 전용) 중소기업은행장은 각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경비에서 인건비(급여성 경비 포함)로의 전용과 임원급여, 직원급여 및 잡급예산을 증액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예산집행의 규제) 중소기업은행장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.

제5조(예산의 초과집행) 중소기업은행장은 다음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.

1. 금융비용, 제상각비, 영업외비용, 특별손실
2. 퇴직급여충당금, 세금과공과, 보험료, 등기소송비

제6조(예비비의 사용) 중소기업은행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다만,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등 인건비성예비비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지급할 수 있고,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당해연도 결산 보고서 제출 시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의 이월)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할 수 없다. 다만,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 및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월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(정 원) ①2021년도 직급별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다.

②제1항의 직급별 정원의 구분은 임원, 1급, 2급, 3급, 4급 및 행원으로 한다.

③중소기업은행장은 업무량증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상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(하위직급의 상향조정 운용은 포함하되 상위직급의 하향운용은 제외)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[별표1]

인건비 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0년 예 산	2021년 예산		
		금 액	전년대비	
			증감액	증감률
총인건비	1,150,487	1,160,840	10,353	0.9
인 건 비	1,138,955	1,149,204	10,249	0.9
급여성복리후생비	11,532	11,636	104	0.9
퇴직급여충당금	225,624	263,910	38,286	17.0
정원외직원인건비	45,222	45,629	407	0.9
인건비예비비	530,613	578,345	47,732	0.9
합 계	1,951,946	2,048,724	96,778	4.96

[별표2]

2021년도 직급별 정원

(단위 : 명)

구 분	2019년			2020년			2021년	
	정원 (A)	현원 (B)	정현원차 (A-B)	정원 (A)	현원 (B)	정현원차 (A-B)	정원	현원
임 원	4	3	1	4	3	1	4	-
1 급	67	67	0	67	56	11	67	-
2 급	360	353	7	360	357	3	360	-
3 급	2,128	2,214	△ 86	2,212	2,199	13	2,212	-
4 급	3,734	3,259	475	3,834	3,421	413	3,834	-
행원급	2,916	3,284	△ 368	3,032	3,272	△ 240	3,032	-
합 계	9,209	9,180	29	9,509	9,308	201	9,509	-

- 주1) 3급이하 통합 운용 (~'23.12.31)
- 2) 2020년 정원 : 수시증원 61명 반영(2020.4.22.)
- 3) 2019년 정원 : 수시증원 200명 반영(2019.4.18.)

<붙임>

관 계 법 규

□ 중소기업은행법

제37조 (회계연도·예산 및 결산)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,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산업금융과
연 락 처	02-2100-2864